

익산시조례 제1099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16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여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4.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
5.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투자사업 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사업 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 담당관,과(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사업심사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와 자료를 첨부하여 상반기 심사는 2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5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해당연도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그 밖의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심사의뢰를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3호가목 중 “10억”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 중 “30억”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다목 중 “200억”을 “300억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

익 산 시



익산시 일반현황

1. 지역적 특성

-
-

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

구 분	Y-3	Y-2	Y-1	당해년도(Y)	Y+ 1 예상
인구수 (천명)					
증가율 (%)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년도/전년도*100

3. 면 적 : km²

4. ○○○○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5. ○○○○년 재정현황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6. 채무전망

(단위 : 억원, 매년 1. 1 기준)

구 분 \ 연 도		Y-1	당해년도 (Y)	Y+ 1	Y+ 2	비 고
현 재 액						
신규채무액						
상 환 액						
당해년도말채무액						
채무비비율(%)						
실질수지비율(%)						
주민1인당 채 무 액 (천원)	원금기준					
	원리금기준					

※ 연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 원금기준)

7. 투자사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년도(Y)	Y+ 1	증(△)감율(%)
계				
일반공공행정	소 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소 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소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	소 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환경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년도(Y)	Y+ 1	증(△)감율(%)
보 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농림 해양 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 중소 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 송 및 교 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 및 지역 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과 학 기 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비	예비비			
기타	기 타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사업명	(일반·특별회계, [재심사]) ※ [] 는 재심사만 기재	분	분 야	부 문
		류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목적

-
-
-

나.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당해년도(Y)	Y+ 1	Y+ 2	Y+ 3	Y+4이후	비고
계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채								
기타(민자)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당해년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제 예산 확보액은 ()에 내서

다. 사업추진계획

-
-
-

라. 기대 효과

-
-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공사비	소 계		
보상비	소 계		
용역비	소 계		
기타	소 계		

※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3. 세부사업추진계획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입안,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으로 단계적 추진순 으로 구분 기재

4.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

라. 사업의 파급효과

-
-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

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

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등)

-
-

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

자. 기 타

【재심사사업】 ※ 재심사, 재상정, 재검토 사업일 경우 작성

-
-
- 사업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비고
당초						
변경						
증감						

- 사업규모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 · 감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 타						

5.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기구 및 조직

-
-

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 + 3	Y + 4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					
순 익(C=A-B)						

세부시설운영계획

-
-

<작성요령>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준공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한다.

타 당 성 조 사 용 역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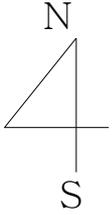
용역개요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용역결과

- 사업 필요성 등
-
- 사업계획
-
- 재정계획
-
- 종합의견 :
-

위 치 도



사업명 :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현 장 사 진

사업명 :



【별지 제2호서식】

투융자사업 재원조달능력판단 및 실무심사 조서

익 산 시

□ 가용재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Y-2	Y-1	당해년도 (Y)	Y+1	Y+2	비고
세 입	세입합계 (I)						
	자체재원	소계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기타					
	의존재원	소계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채							
세 출	세출합계 (II)						
	의 무 경 비 (A)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보전지출				
		의존재원 사업	의존재원				
		지방비부담금					
		예비비					
	자 체 사 업 재 원 (C)	자체사업재원계(B)					
		추 진 중	소규모사업(시군구 20억미만사업 시도 40억원미만사업)				
			계속사업(기투자사업)				
		(C)	시군구지원사업				
			신규투자 가용재원(D) (I-A-C)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작성요령>

- ① 자치단체별, 연도별 가용재원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가용재원현황 별도 작성
 - Y-2년도 및 Y-1년도는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작성
 - ※ Y-1년도의 경우 결산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는 최종예산서를 근거로 작성
 - 당해년도(Y)는 상반기 심사시에는 당해년도(Y)당초예산서를 근거로 하고, 하반기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작성(추경예산이 없을 시는 당초예산으로 작성)
 - Y+1년도 및 Y+2년도는 Y+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작성
- ② 세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 ③ 세출의 의존재원사업중 의존재원은 세입의 의존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 ④ 자체사업 재원 계(B)는 기 진행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
 - 기 진행중인 사업의 소규모사업은 투융자심사대상금액(시군20억원이하, 시도40억원이하) 이하 사업비 기재
 - 계속사업은(기투자사업) 투자심사(시군 20억원이상, 시도 40억원이상)사업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 기재
 - 시군구지원사업은 시도에서 시군구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사업비 합계 기재(광역시도에서만 작성)
- ⑤ 신규투자가용재원은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을 의미함



□ 투자사업우선순위표

(단위 : 억원)

우선 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사 업 비										우선순위 책정사유	비고
				계		기투자		당해년도 (Y)		Y+1 계획		Y+2 이후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계	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① 자치단체별 2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만 작성
- ② 우선순위 책정사유는 검토의견을 요약 기재
- ③ 의존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
- ④ 사업비 연도 표시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 사업명 :

구 분	재 원 조 달 계 획(억원)							검토결과	검토자 (직,성명)
	계	기투자	당해 년도 (Y)	Y+ 1	Y+2	Y+3	Y+ 4		
계									
의 존 재 원	국 비								
	특 별 교부세								
	시도비								
민간자본									
기금·출연금									
자체재원									
지 방 채									
종합실무 의 건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실 무 심 사 조 서

□ 사업명 :

(익산시)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비 지원 가 능 성	◦
	· 지방비확보 가 능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비 ◦ 시·군비
	· 지방채의 적 정 성	◦
4. 재무적 · 경제적 수익성		◦
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및 시 급 성	◦
	· 파급효과	◦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6. 주민숙원 · 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	· 주민숙원 및수혜도	◦
	· 사업요구도	◦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규모 ◦ 사 업 비 ◦ 사업기간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인근 용지보상가격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		◦
10. 기 타		◦ ※ 투·융자심사사업 심사자료의 사업별 조사내용 기재
11. 종합 의견	· 적 정()) · 조건부()) · 재검토()) · 부적정())	◦

【별지 제3호서식】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

익 산 시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 자본금 대비 200% ~ 300% 미만 ○ 자본금 대비 300% ~ 400% 미만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20) (15) (10) 		
자본금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100% ~ 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50% ~ 100% 미만 ○ 당해투자금액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20) (15) (10) 		
투자실적(국내외) -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 당해투자금액의 200% ~ 3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 200% 미만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 투자실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2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 (0) 		

※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로 확인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

구 분	기 준	평가배점	평 점	비 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 실적(70점)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30점)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 ※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

【별지 제4호서식】

투 · 용자심사결과 보고서

익 산 시

1. 투자심사결과

가. 회 계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 ①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나.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계												
도												
시												
군												

다. 분야별

(단위 : 건, 억원)

구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일반공공행정	소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공질서및안전	소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소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및관광	소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환 경 보 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 회 복 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 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농림해양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중소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과 학 기 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 비 비	예비비											
기 타	기 타											

라. 투자비규모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계												
30억원미만												
30-50억원 미만												
50-100억원 미만												
100-200억원 미만												
200-300억원 미만												
300-500억원 미만												
500억원이상												

마. 심사대상 기관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수	금 액										
계												
중앙심사												
시도심사												
시군구심사												

바.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

㉠ 사 유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조건부		재 검 토		부적정		반 려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해도 저조										
기 타										

- [주] ①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업
 ②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등)
 ③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⑤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휴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국가정책목표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능한 사업
 ⑦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
 ⑧사업추진준비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주민수해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기 타 : 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

②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시·도		시·군·구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해도 저조						
기 타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단 체 명	계	공 무 원	교 수	공 인 회 계 사	연 구 위 원	지 방 의 원	시 민 단 체 소 속 원	기 타
합 계	()	()	()	()	()	()	()	()
시·도본청								
시·군·구계								
시 계								
○ ○ 시								
⋮								
군 계								
△ △ 군								
⋮								
구 계								
× × 구								
⋮								

- ※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명
 ② 여성위원은()안에 기재

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 목	
실 태	
문 제 점	
발전방안	

별지 서식 제5호, 별지 서식 제6호, 별지 서식 제6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심사대상) ① (생략)</p> <p>1. <u>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u></p> <p>2. ~ 3.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신설></u></p> <p>4.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4. <u>전액 국도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u></p> <p style="padding-left: 20px;"><u><신설></u></p> <p>제3조 ~ 제6조 (생략)</p> <p>제7조(심사의 절차) ① <u>투자사업 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u></p> <p><u>다만,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u></p>	<p>제2조(심사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u>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u></p> <p>5. <u>그 밖의 -----</u></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u></p> <p>5. <u>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u></p> <p>제3조 ~ 제6조 (현행과 같음)</p> <p>제7조(심사의 절차) ① <u>투자사업 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u></p> <p><u>다만, 긴급히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② 투자사업 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p> <p>③ 사업주관 담당관·과(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상반기 심사는 2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5일까지 기획예산 과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 투자사업 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p> <p>③ 사업주관 담당관·과(소)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사업 심사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와 자료를 첨부하여 상반기 심사는 2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7월 5일까지 기획예산 과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해당연도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투자심사 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그 밖의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현행	개정안
<p>제7조의2(심사자료 제출) ①심사의뢰자는 “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5호”, “별지서식 제6호”, 또는 “별지서식 제6호의2”와 자료를 첨부 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p> <p>②기획예산과장은 심사대상 자료에 대하여 “별지서식 제3호”, “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 의뢰 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심사결과를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도에 제출 하여야 한다.</p> <p>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사업 심사 의뢰를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상반기 심사는 매년 5월 5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매년 11월 5일까지 심사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삭제></p> <p>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7조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심사의뢰를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제9조(재심사) (생략)	제9조(재심사)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가. 시자체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u>10억</u> 이상 늘어난 사업	가. ----- ----- <u>10억</u> 원-----
나. 도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u>30억</u> 이상 늘어난 사업	나. ----- ----- <u>50억</u> 원-----
다. 중앙의뢰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u>200억</u> 이상 늘어난 사업	다. ----- ----- <u>300억</u> 원-----

현 행	개 정 안																																				
<p>【별지서식 제1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의2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p> <p style="text-align: center;">익 산 시 (○○ 담당관·과(소))</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 일 반 현 황</p> <p>1. 지역적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Y-3</th> <th>Y-2</th> <th>Y-1</th> <th>기준년도 (Y)</th> <th>Y+1 예상</th> </tr> </thead> <tbody> <tr> <td>인구수 (천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증가율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년도/전년도*100</p> <p>3. 면 적 : km²</p> <p>4. Y년 지역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p>5. Y년 재정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기준) ○ 주민1인당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 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구 분	Y-3	Y-2	Y-1	기준년도 (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증가율 (%)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의뢰서</p> <p style="text-align: center;">익 산 시</p> <p style="text-align: center;">익산시 일반현황</p> <p>1. 지역적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2. 인구 및 증·감율 — 5년간 평균증감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Y-3</th> <th>Y-2</th> <th>Y-1</th> <th>당해년도 (Y)</th> <th>Y+1 예상</th> </tr> </thead> <tbody> <tr> <td>인구수 (천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증가율 (%)</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증가율 : 당해년도/전년도*100</p> <p>3. 면 적 : km²</p> <p>4. ○○○○년 지역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포장율 : % ○ 자동차보유 : 천대 ○ 상수도보급율 : % ○ 주택보급율 : % ○ 하수도보급율 : % ○ 경지정리율 : % ○ 하천 개수율 : %(지방하천 %, 소하천 %) <p>5. ○○○○년 재정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계예산규모 : 억원(일반회계 , 특별회계) ○ 재정 자립도 : % (일반회계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천원(원금기준) 	구 분	Y-3	Y-2	Y-1	당해년도 (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증가율 (%)					
구 분	Y-3	Y-2	Y-1	기준년도 (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증가율 (%)																																					
구 분	Y-3	Y-2	Y-1	당해년도 (Y)	Y+1 예상																																
인구수 (천명)																																					
증가율 (%)																																					



현 행 **개 정 안**

7. 채무전망

연 도		Y-1	기준년도(Y)	Y+1	Y+2	비 고
구 분						
현 재	액(억원)(1월1일기준)					
	신규채무액(억원)					
	상 환 액(억원)					
	당해연도말채무액(억원)					
	채무비비율(%)					
	실질수지비율(%)					
주민인당	원금기준					
채 무 액(천원)	원리금기준					

※ 지방채 결산작업결과와 일치시킬 것(일반회계 원금기준)

8. 투자사업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기준년도(Y)	Y+1	증(Δ)감(%)
계				
일 반 행 정				
사 회 개 발 비	계			
	교육 및 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 제 개 발 비	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도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 방 위 비	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9. 투자사업우선순위표

(단위 : 억원)

우선 순위	사업 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사 업 비						우선위 책상유	비 고		
				계		기 투자		기준년(Y)				Y+1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자 체	의 존
계	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① 자치단체별 1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만 작성
 ② 우선순위 책정사유는 검토의견을 요약 기재
 ③ 자체재원은 순수한 자치단체수입, 의존재원은 지원재원 및 지방채

(단위 : 억원)

구 분	당해년도(Y)	Y+1	증(Δ)감(%)
	보 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농 립 해 양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 업 중 소 기 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소 계		
수 송 및 교 통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 토 및 지 역 개 발			
	소 계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과 학 기 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 비 비	예비비		
기 타	기 타		

※ 구분 란에 해당년도 기재



현행					개정안				
사업명	(일반·특별회계)	부	장	명	관	명	기능	별	
사업명	(일반·특별회계, [재심사]) ※ [] 는 재심사만 기재	분	분	야	부	문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목적 ○ ○ ○ 나. 사업개요 ○ 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량 : ○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1. 사업개요 가. 사업추진목적 ○ ○ ○ 나. 사업개요 ○ 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량 : ○ 총사업비 : 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기준년(Y)	Y+1	Y+2	Y+3	Y+4이후	비고
계									
국비									
교부세									
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기타(민자)									
※ Y(기준년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제 예산확보액은 ()에 내서 다. 사업추진계획 ○ ○ ○ 라. 기대효과 ○ ○ ○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 구분 안에 해당년도 기재 당해년도는 연간 투자계획분으로 하고 실제 예산확보액은 ()에 내서 다. 사업추진계획 ○ ○ ○ 라. 기대효과 ○ ○ ○ 2.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산출기초		금액					
총계									
공사비	소계								
보상비	소계								
용역비	소계								
기타	소계								
※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작성				



현행	개정안
----	-----

3. 세부사업추진계획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3. 세부사업추진계획

구분	사업내용	법적근거	추진기간	세부추진내용	비고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입안,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으로 단계적 추진순으로 구분 기재

※ 사업추진상 구분은 기본계획입안, 사업승인, 보상, 설계(용역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기초, 골조, 내장, 설비) 등으로 단계적 추진순으로 구분 기재

4.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

라. 사업의 파급효과

-
-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

4. 투자심의자료

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

나. 국가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
-

다. 주민의 숙원도 및 수혜도

-
-

라. 사업의 파급효과

-
-

마. 경제적 수익성 및 타당성

-
-



현행	개정안																																																																																																																								
<p>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 ○</p> <p>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등) ○ ○ ○</p> <p>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 ○</p> <p>자. 기 타 ○ ○ ○</p> <p>5. 공공시설 운영계획서</p> <p><input type="checkbox"/> 기구 및 조직 ○ ○</p> <p><input type="checkbox"/> 수지전망</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준공연도 (Y)</th> <th>Y+1</th> <th>Y+2</th> <th>Y+3</th> <th>Y+4</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입 (A)</td>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입장료</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사용료</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지출 (B)</td>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인건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시설운영비</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손익(C=A-B)</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세부시설운영계획 ○ ○ ○</p> <p><작성요령>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준공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A⁴ 복사용지 2~3매 분량 ⑤ 공공시설이라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 중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 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한다.</p>	구분	준공연도 (Y)	Y+1	Y+2	Y+3	Y+4	수입 (A)	계					입장료					사용료					지출 (B)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손익(C=A-B)						<p>바. 재원조달 가능여부 및 채무상환능력 ○ ○</p> <p>사.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등) ○ ○</p> <p>아.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p> <p>자. 기 타 【재심사사업】 ※ 재심사, 재상정, 재검토 사업일 경우 작성 ○ ○</p> <p>- 사업비 변경내역</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국비</th> <th>도비</th> <th>시·군비</th> <th>기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당초</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변경</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증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사업규모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당 초</th> <th colspan="2">변 경</th> <th colspan="2">증·감</th> </tr> <tr> <th>사업비</th> <th>사업규모</th> <th>사업비</th> <th>사업규모</th> <th>사업비</th> <th>사업규모</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공사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보상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용역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 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 타						
구분	준공연도 (Y)	Y+1	Y+2	Y+3	Y+4																																																																																																																				
수입 (A)	계																																																																																																																								
	입장료																																																																																																																								
	사용료																																																																																																																								
지출 (B)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손익(C=A-B)																																																																																																																									
구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규모																																																																																																																			
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기 타																																																																																																																									



현	행	개	정	안																																																																			
실 무 심 사 의 견 서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5. 공공시설 운영계획서 <input type="checkbox"/> 기구 및 조직 . . <input type="checkbox"/> 수지전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심 사 항 목</th> <th style="width: 70%;">심 사 의 견</th> </tr> </thead> <tbody> <tr> <td>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td> <td>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td> </tr> <tr> <td>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td> <td> . 중기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td> </tr> <tr> <td>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td> <td> . 국비 지원 가능성 . 지방비 확보 가능성 . 지방채의 적정성 </td> </tr> <tr> <td>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td> <td> . </td> </tr> <tr> <td>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td> <td> . 필요성 및 시급성 . 파급효과 </td> </tr> </tbody> </table>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 중기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비 지원 가능성 . 지방비 확보 가능성 . 지방채의 적정성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및 시급성 . 파급효과	(단위 : 천원)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 국가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 중기재정계획 등 반영시기,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 국비 지원 가능성 . 지방비 확보 가능성 . 지방채의 적정성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및 시급성 . 파급효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th> <th style="text-align: center;">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준공년도 (Y)</th> <th style="text-align: center;">Y + 1</th> <th style="text-align: center;">Y + 2</th> <th style="text-align: center;">Y + 3</th> <th style="text-align: center;">Y + 4</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수 입 (A)</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입 장 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사 용 료</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지 출 (B)</td>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 건 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설운영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감가상각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손 익(C=A-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 + 3	Y + 4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손 익(C=A-B)							
구		분	준공년도 (Y)	Y + 1	Y + 2	Y + 3	Y + 4																																																																
수 입 (A)	계																																																																						
	입 장 료																																																																						
	사 용 료																																																																						
지 출 (B)	계																																																																						
	인 건 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손 익(C=A-B)																																																																							
		<input type="checkbox"/> 세부시설운영계획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심 사 항 목</th> <th style="width: 70%;">심 사 의 견</th> </tr> </thead> <tbody> <tr> <td>6. 주민숙원·수해도 및 사업 요구도</td> <td> . 주민숙원 및 수해도 . 사업요구도 </td> </tr> <tr> <td>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td> <td> . 사업규모 . 사업비 . 사업기간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인근 용지보상가격 등 기재 </td> </tr> <tr> <td>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 이행사항 등)</td> <td> . </td> </tr> <tr> <td>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td> <td> . </td> </tr> <tr> <td>10. 기</td> <td> . 타 </td> </tr> <tr> <td>11. 종합의견</td> <td> . 적 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td> </tr> </tbody> </table>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6. 주민숙원·수해도 및 사업 요구도	. 주민숙원 및 수해도 . 사업요구도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규모 . 사업비 . 사업기간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인근 용지보상가격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 이행사항 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10. 기	. 타	11. 종합의견	. 적 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작성요령> ① 각 사업별로 별지 작성 ② 공공시설준공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기구·소요예산 등 ③ 동 시설을 운영·활용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④ 공공시설이라함은 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체육관,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등을 말한다.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6. 주민숙원·수해도 및 사업 요구도	. 주민숙원 및 수해도 . 사업요구도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규모 . 사업비 . 사업기간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인근 용지보상가격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 이행사항 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10. 기	. 타																																																																						
11. 종합의견	. 적 정 () . 조건부 () . 재검토 () . 부적정 ()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input type="checkbox"/> 용역개요 ○ 용역건명 : ○ 용역기관 : ○ 용역기간 : ○ 용역내용 :																																																																					
		<input type="checkbox"/> 용역결과 ○ 사업 필요성 등 - ○ 사업계획 - ○ 재정계획 - ○ 종합의견 : -																																																																					



현 행	개 정 안																
위 치 도	위 치 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범 례</th> </tr> </thead> <tbody> <tr> <td>금회시공</td> <td>적색</td> </tr> <tr> <td>기 시 공</td> <td>청색</td> </tr> <tr> <td>장래시공</td> <td>황색</td> </tr> </tbody> </table> </div>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left;"> <p>사업명 :</p> </div>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범 례</th> </tr> </thead> <tbody> <tr> <td>금회시공</td> <td>적색</td> </tr> <tr> <td>기 시 공</td> <td>청색</td> </tr> <tr> <td>장래시공</td> <td>황색</td> </tr> </tbody> </table> </div>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범 례																	
금회시공	적색																
기 시 공	청색																
장래시공	황색																
현 장 사 진	현 장 사 진																
	<p>사업명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0px; width: 100%;"></div>																



현 행 개 정 안

다. 분야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국도자원보존개발비											
	교통관리비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라. 투자비규모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 상		적 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 려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30억원미만												
30-100억원미만												
100-200억원미만												
200-500억원미만												
500억원 이상												

- ② 세입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하고 세출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자체사업재원을 포함하여 기재
- ③ 세출의 의존재원사업중 의존재원은 세입의 의존재원합계와 일치하여야 하고 시군비 부담액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 부담액을 기재
- ④ 자체사업 재원 계(B)는 기 진행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
 - 기 진행중인 사업의 소규모사업은 투융자심사대상금액 (시군20억원이하, 시도40억원이하) 이하 사업비 기재
 - 계속사업은(기투자사업) 투자심사(시군 20억원이상, 시도 40억원이상) 사업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 기재
 - 시군구지원사업은 시도에서 시군구에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경상 보조사업비 합계 기재(광역시도에서만 작성)
- ⑤ 신규투자비용재원은 금회 투자심사사업에 대하여 향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을 의미함

투자사업우선순위표

(단위 : 억원)

우선 순위	사업 명	사업 개요	사 업 기 간	사 업 비						우선 순위 책정 사유	비 고
				계		기투자		당해년도			
				자체	의존	자체	의존	Y	Y+1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① 자치단체별 2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만 작성
- ② 우선순위 책정사유는 검토의견을 요약기재
- ③ 의존재원은 국비, 시도비 등 지원재원 및 지방채
- ④ 사업비 연도 표시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사업명 :

구 분	재 원 조 달 계 획(억원)							검토 결과	검토자 (직,성명)
	계	기투자	당해년도 (Y)	Y+1	Y+2	Y+3	Y+4		
의존재원	국비								
	특별교부세								
	시도비								
민간자본	기금출연금								
	자체재원								
	지방채								
	종합실무의견								

※ 구분 란에는 해당년도 기재



현 행										개 정 안																																		
마. 심사대상 기관별 (단위 : 건, 억원)										실 무 심 사 조 서 □사업명 : (익산시)																																		
구분	대 상	적 정	조 건 부	재 검 토	부 적 정	반 려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중앙 심사 시도 심사 시군 심사																																												
바.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 ① 사 유 별 (단위 : 건, 억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50%;">·국비지원 가능성</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width: 50%;">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td> <td>·지방비확보 가능성</td> <td>○ 사·도비 ○ 사·군비</td> </tr> <tr> <td>·지방채의 적정성</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 colspan="3">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50%;">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td> <td>·필요성 및 시급성</td> <td>○</td> </tr> <tr> <td>·과급효과</td> <td>○</td> </tr> </table>			·국비지원 가능성	○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지방비확보 가능성	○ 사·도비 ○ 사·군비	·지방채의 적정성	○	○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	·필요성 및 시급성	○	·과급효과	○														
	·국비지원 가능성	○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지방비확보 가능성	○ 사·도비 ○ 사·군비																																										
	·지방채의 적정성	○																																										
	○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5. 사업의 필요성및 시급성	·필요성 및 시급성	○																																										
	·과급효과	○																																										
구 분	대 상	조 건 부	재 검 토	부 적 정	반 려				심 사 항 목	심 사 의 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사업목적실현불가																																												
지자체시행비대상																																												
중복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또사업)부적정																																												
국가정책목표등부적합																																												
경제적타당성저조																																												
사업추진준비미비																																												
주민수해도저조																																												
기 타																																												
[주] ①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업 ②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골프장조성 등) ③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 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 어려운 사업 ⑤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후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국가정책목표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능한 사업 ⑦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예"공관장, 경영수익사업 등 분야) ⑧사업추진준비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주민수해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기 타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50%;">·주민숙원 ·수해도</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width: 50%;">6. 주민숙원 · 수해도 및 사업 요 구 도</td> <td>·주민숙원</td> <td>○</td> </tr> <tr> <td>·수해도</td> <td>○</td> </tr> <tr> <td colspan="3">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td> <td>○ 사업규모 ○ 사 업 비 ○ 사업기간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인근 용지보상가격 등 기재</td> </tr> <tr> <td colspan="3">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td> <td>○</td> </tr> <tr> <td colspan="3">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td> <td>○</td> </tr> <tr> <td colspan="3">10. 기 타</td> <td>○ 투·융자심사사업 심사자료의 사업별 조사내용 기재</td> </tr> <tr> <td rowspan="4" style="width: 50%;">11. 종합 의견</td> <td>·적 정 ()</td> <td>○</td> </tr> <tr> <td>·조건부()</td> <td>○</td> </tr> <tr> <td>·재검토 ()</td> <td>○</td> </tr> <tr> <td>·부적정 ()</td> <td>○</td> </tr> </table>			·주민숙원 ·수해도	○	6. 주민숙원 · 수해도 및 사업 요 구 도	·주민숙원	○	·수해도	○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규모 ○ 사 업 비 ○ 사업기간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인근 용지보상가격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			○	10. 기 타			○ 투·융자심사사업 심사자료의 사업별 조사내용 기재	11. 종합 의견	·적 정 ()	○	·조건부()	○	·재검토 ()	○	·부적정 ()	○
	·주민숙원 ·수해도	○																																										
6. 주민숙원 · 수해도 및 사업 요 구 도	·주민숙원	○																																										
	·수해도	○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규모 ○ 사 업 비 ○ 사업기간 ※ 사업비 산출시기, 산출근거, 인근 용지보상가격 등 기재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 책			○																																									
10. 기 타			○ 투·융자심사사업 심사자료의 사업별 조사내용 기재																																									
11. 종합 의견	·적 정 ()	○																																										
	·조건부()	○																																										
	·재검토 ()	○																																										
	·부적정 ()	○																																										



현	행	개	정	안
---	---	---	---	---

②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시·도		시·군·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사업목적실현불가							
지자체시행비대상							
중복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부적정							
국가정책목표등부적합							
경제적타당성저조							
사업추진준비미비							
주민수혜도저조							
기							
타							

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

단체명	계	공무원	교수	공인 회계사	연구 위원	지방 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기타
합	()	()	()	()	()	()	()	()
시·도분청								
시·군·구계								
시 계								
○○시								
⋮								
⋮								
⋮								
⋮								
군 계								
△△군								
⋮								
⋮								
⋮								
구 계								
××구								
⋮								
⋮								
⋮								

- ※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명
 ② 여성위원은()안에 기재



현 행		개 정 안
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		
제 목		
실 태		
문 제 점		
발 전 방 안		

현행	개정안																																																																																																																																																			
<p>【별지서식 제3호】 [제7조의제2항 관련] Y(금년도) 투융자사업 실무심사 조서</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 (○ ○ 담당관·과(소))</p> <p style="text-align: center;">실 무 심 사 조 서</p> <p>□ 사업명 :</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심사항목</th> <th style="width: 50%;">심사의견</th> </tr> </thead> <tbody> <tr> <td>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td> <td>○</td> </tr> <tr> <td>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연계성</td> <td>○</td> </tr> <tr> <td rowspan="3">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td> <td>·국비 지원 가능성 ○</td> </tr> <tr> <td>·지방비확보 가능성 ○</td> </tr> <tr> <td>·지방채의 적정성 ○</td> </tr> <tr> <td>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td> <td>○</td> </tr> <tr> <td rowspan="2">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td> <td>·필요성 및 시급성 ○</td> </tr> <tr> <td>·과급효과 ○</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심사항목</th> <th style="width: 50%;">심사의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6.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td> <td>· 주민 숙원 ○</td> </tr> <tr> <td>·사업요구도 ○</td> </tr> <tr> <td>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td> <td>○</td> </tr> <tr> <td>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td> <td>○</td> </tr> <tr> <td>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td> <td>○</td> </tr> <tr> <td>10. 기타</td> <td>○</td> </tr> <tr> <td rowspan="4">11. 종합의견</td> <td>·적정 () ○</td> </tr> <tr> <td>·조건부 () ○</td> </tr> <tr> <td>·개검토 () ○</td> </tr> <tr> <td>·부적정 () ○</td> </tr> </tbody> </table>	심사항목	심사의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	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연계성	○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국비 지원 가능성 ○	·지방비확보 가능성 ○	·지방채의 적정성 ○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성 및 시급성 ○	·과급효과 ○	심사항목	심사의견	6.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주민 숙원 ○	·사업요구도 ○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10. 기타	○	11. 종합의견	·적정 () ○	·조건부 () ○	·개검토 () ○	·부적정 () ○	<p>【별지제3호서식】 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p> <p style="text-align: center;">익 산 시</p>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fffcc;">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기준</th> <th style="width: 10%;">평가배점</th> <th style="width: 5%;">평점</th> <th style="width: 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100점</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부채비율 (25점)</td> <td>○ 자본금 대비 200% 미만 (25)</td> <td></td> <td></td> <td></td> </tr> <tr> <td>○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20)</td> <td></td> <td></td> <td></td> </tr> <tr> <td>○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15)</td> <td></td> <td></td> <td></td> </tr> <tr> <td>○ 자본금 대비 400% 이상 (1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자본금 (25점)</td> <td>○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25)</td> <td></td> <td></td> <td></td> </tr> <tr> <td>○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20)</td> <td></td> <td></td> <td></td> </tr> <tr> <td>○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15)</td> <td></td> <td></td> <td></td> </tr> <tr> <td>○ 당해투자금액 미만 (1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5">투자실적(국비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td> <td>○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25)</td> <td></td> <td></td> <td></td> </tr> <tr> <td>○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20)</td> <td></td> <td></td> <td></td> </tr> <tr> <td>○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15)</td> <td></td> <td></td> <td></td> </tr> <tr> <td>○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10)</td> <td></td> <td></td> <td></td> </tr> <tr> <td>○ 투자실적 없음 (5)</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불량거래자 등록 여부(25점)</td> <td>○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25)</td> <td></td> <td></td> <td></td> </tr> <tr> <td>○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로 확인</p>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ffffcc;">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기준</th> <th style="width: 10%;">평가배점</th> <th style="width: 5%;">평점</th> <th style="width: 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100점</td> <td></td> <td></td> </tr> <tr> <td rowspan="5">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70점)</td> <td>○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70)</td> <td></td> <td></td> <td></td> </tr> <tr> <td>○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65)</td> <td></td> <td></td> <td></td> </tr> <tr> <td>○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60)</td> <td></td> <td></td> <td></td> </tr> <tr> <td>○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55)</td> <td></td> <td></td> <td></td> </tr> <tr> <td>○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5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불량거래자 등록 여부(30점)</td> <td>○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30)</td> <td></td> <td></td> <td></td> </tr> <tr> <td>○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 조회표로 확인</p>	구분	기준	평가배점	평점	비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25)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20)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15)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25)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20)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15)				○ 당해투자금액 미만 (10)				투자실적(국비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25)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20)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15)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10)				○ 투자실적 없음 (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25)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0)				구분	기준	평가배점	평점	비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70)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65)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60)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55)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50)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30)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0)			
심사항목	심사의견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																																																																																																																																																			
2.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연계성	○																																																																																																																																																			
3. 소요자금 및 원리금 상환능력	·국비 지원 가능성 ○																																																																																																																																																			
	·지방비확보 가능성 ○																																																																																																																																																			
	·지방채의 적정성 ○																																																																																																																																																			
4.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																																																																																																																																																			
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필요성 및 시급성 ○																																																																																																																																																			
	·과급효과 ○																																																																																																																																																			
심사항목	심사의견																																																																																																																																																			
6.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 주민 숙원 ○																																																																																																																																																			
	·사업요구도 ○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																																																																																																																																																			
8. 사업추진 준비상황 (법적절차이행사항등)	○																																																																																																																																																			
9.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10. 기타	○																																																																																																																																																			
11. 종합의견	·적정 () ○																																																																																																																																																			
	·조건부 () ○																																																																																																																																																			
	·개검토 () ○																																																																																																																																																			
	·부적정 () ○																																																																																																																																																			
구분	기준	평가배점	평점	비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 자본금 대비 200% 미만 (25)																																																																																																																																																			
	○ 자본금 대비 200%~300% 미만 (20)																																																																																																																																																			
	○ 자본금 대비 300%~400% 미만 (15)																																																																																																																																																			
	○ 자본금 대비 400% 이상 (10)																																																																																																																																																			
자본금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25)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20)																																																																																																																																																			
	○ 당해투자금액의 50%~100% 미만 (15)																																																																																																																																																			
	○ 당해투자금액 미만 (10)																																																																																																																																																			
투자실적(국비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25)																																																																																																																																																			
	○ 당해투자금액의 200%~300% 미만 (20)																																																																																																																																																			
	○ 당해투자금액의 100%~200% 미만 (15)																																																																																																																																																			
	○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10)																																																																																																																																																			
	○ 투자실적 없음 (5)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25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25)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0)																																																																																																																																																			
구분	기준	평가배점	평점	비고																																																																																																																																																
계		100점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납부실적(70점)	○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70)																																																																																																																																																			
	○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200% 미만 (65)																																																																																																																																																			
	○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150% 미만 (60)																																																																																																																																																			
	○ 당해투자 상당액의 50%~100% 미만 (55)																																																																																																																																																			
	○ 당해투자 상당액의 0%~50% 미만 (50)																																																																																																																																																			
불량거래자 등록 여부(30점)	○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30)																																																																																																																																																			
	○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0)																																																																																																																																																			



현 행 **개 정 안**

【별지서식 제 4호】

진행중인 계속사업현황[제7조의제2항 관련]
(단위 : 억원)

구분	사업계획		연도별투자현황					
	사업명	추진기간	계	Y-1 이전투자	기준년도 (Y)	Y+1	Y+2	Y+3 이후
계				()	()	()	()	()
주요	소계			()	()	()	()	()
				()	()	()	()	()
계속				()	()	()	()	()
				()	()	()	()	()
투자				()	()	()	()	()
				()	()	()	()	()
사업				()	()	()	()	()
				()	()	()	()	()
시군구지원사업 (광역제한함)				()	()	()	()	()
소규모투자사업 (광역 10억만 기준 1억원만)				()	()	()	()	()

- 주) ① ()내에서는 지방비만 기재
 ② 주요사업은 기초자치단체는 1억원이상, 광역은 10억원이상 투자사업
 ③ 작성기준일 : 상반기 3.15일기준, 하반기 7.31기준
 ④ 이미 준공이 완료된 사업은 제외

【별지 제4호서식】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

익 산 시

1. 투자심사결과

가. 회계별

(단위 : 건, 억원)

구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 ①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제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②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제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③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제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나. 단체별

(단위 : 건, 억원)

구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도												
시												
군												

다. 분야별

(단위 : 건, 억원)

구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일반행정	소계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공적안전	소계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소계											
	유아및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문화관광	소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및관광일반											



현 행		개 정 안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환경보호	소 계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사회복지	소 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맞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	소 계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안전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해양수산	소 계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산업중소기업	소 계												
	산업금융지원												
	산업기술지원												
	무역및투자유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일반													
수송및교통	소 계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기타													
국토및지역개발	소 계												
	수자원												
	지역및도시												
산업단지													
(단위 : 건, 억원)													
	구 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과학기술	소 계												
	기술개발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예비	예비												
기타	기타												



현	행	개	정	안																																																																																																																																														
		<p>라. 투자비규모별 (단위 : 건,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대상</th> <th colspan="2">적정</th> <th colspan="2">조건부</th> <th colspan="2">재검토</th> <th colspan="2">부적정</th> <th colspan="2">반려</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30억원미만</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30-50억원미만</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50-100억원미만</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100-200억원미만</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200억-300억미만</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300-500억원미만</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500억원이상</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구 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계													30억원미만													30-50억원미만													50-100억원미만													100-200억원미만													200억-300억미만													300-5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구 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0억원미만																																																																																																																																																		
30-50억원미만																																																																																																																																																		
50-100억원미만																																																																																																																																																		
100-200억원미만																																																																																																																																																		
200억-300억미만																																																																																																																																																		
300-5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p>마. 심사대상 기관별 (단위 : 건,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대상</th> <th colspan="2">적정</th> <th colspan="2">조건부</th> <th colspan="2">재검토</th> <th colspan="2">부적정</th> <th colspan="2">반려</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중앙심사</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시도심사</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시군구심사</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구 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계													중앙심사													시도심사													시군구심사																																																																																							
구 분	대상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중앙심사																																																																																																																																																		
시도심사																																																																																																																																																		
시군구심사																																																																																																																																																		
		<p>바. 조건부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 사유별 내역</p> <p>㉠ 사유별 (단위 : 건,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대상</th> <th colspan="2">조건부</th> <th colspan="2">재검토</th> <th colspan="2">부적정</th> <th colspan="2">반려</th> </tr> <tr>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h>건수</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사업목적 실현불가</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지자체시행 비대상</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중복 과잉투자</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경제적 타당성 저조</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사업추진 준비 미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주민수혜도 저조</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기 타</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주] ①사업목적실현 불가 : 법령상 추진불가 및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사업 ②지자체 시행 비대상 : 국가시행 대상사업, 민간분야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시 문제가 있는 사업("예" 공항조성 등) ③중복과잉투자 : 기존시설이 활용 가능하여 추가시행이 필요치 않은 사업 ④재원부적정 및 재원조달불가 : 국비등 재원부담이 부적정, 재정상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운 사업 ⑤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 사업규모사업비가 예상수요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하여 시설유휴화 및 추가시행 예상되는 사업 ⑥국가정책목표등 부적합 : 국가시책방향에 맞지 않아 국고지원 불가한 사업 ⑦경제적타당성저조 : 사업완료 후 수익보다 유지관리비가 많 이 소요되어,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업 ⑧사업추진준비미비 : 계획미확정, 중장기 계획 미반영, 타당성 분석 미이행 사업 ⑨주민수혜도 저조 : 수혜자가 특정 소수로 대다수 수혜대상이 아닌 사업 ⑩기 타 : 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업</p>			구 분	대상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구 분	대상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혜도 저조																																																																																																																																																		
기 타																																																																																																																																																		



현 행	개 정 안																																																																																																																																																																																																																																																																					
	<p>② 단 체 별 (단위 : 건,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60%;">구 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시·도</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시·군·구</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건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건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건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금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사업목적 실현불가</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지자체시행 비대상</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중복 과잉투자</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경제적 타당성 저조</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사업추진 준비 미비</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주민수해도 저조</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 타</td> <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2.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단 체 명</th> <th style="width: 5%;">계</th> <th style="width: 5%;">공무원</th> <th style="width: 5%;">교수</th> <th style="width: 5%;">공 인 회계사</th> <th style="width: 5%;">연구위원</th> <th style="width: 5%;">지방 의원</th> <th style="width: 5%;">시민단체 소속원</th> <th style="width: 5%;">기 타</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r> <tr> <td>시·도분청</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시·군·구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시 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시</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군 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군</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구 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구</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 ① 총위원 ○○명중 여성위원○○명 ② 여성위원은()안에 기재</p>	구 분	계		시·도		시·군·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해도 저조							기 타							단 체 명	계	공무원	교수	공 인 회계사	연구위원	지방 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기 타	합 계	()	()	()	()	()	()	()	()	시·도분청									시·군·구계									시 계									○○시									⋮									⋮									⋮									군 계									△△군									⋮									⋮									⋮									구 계									××구									⋮									⋮									⋮								
구 분	계		시·도		시·군·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사업목적 실현불가																																																																																																																																																																																																																																																																						
지자체시행 비대상																																																																																																																																																																																																																																																																						
중복 과잉투자																																																																																																																																																																																																																																																																						
재원부적정및재원조달불가																																																																																																																																																																																																																																																																						
사업규모·사업비 부적정																																																																																																																																																																																																																																																																						
국가정책목표 등 부적합																																																																																																																																																																																																																																																																						
경제적 타당성 저조																																																																																																																																																																																																																																																																						
사업추진 준비 미비																																																																																																																																																																																																																																																																						
주민수해도 저조																																																																																																																																																																																																																																																																						
기 타																																																																																																																																																																																																																																																																						
단 체 명	계	공무원	교수	공 인 회계사	연구위원	지방 의원	시민단체 소속원	기 타																																																																																																																																																																																																																																																														
합 계	()	()	()	()	()	()	()	()																																																																																																																																																																																																																																																														
시·도분청																																																																																																																																																																																																																																																																						
시·군·구계																																																																																																																																																																																																																																																																						
시 계																																																																																																																																																																																																																																																																						
○○시																																																																																																																																																																																																																																																																						
⋮																																																																																																																																																																																																																																																																						
⋮																																																																																																																																																																																																																																																																						
⋮																																																																																																																																																																																																																																																																						
군 계																																																																																																																																																																																																																																																																						
△△군																																																																																																																																																																																																																																																																						
⋮																																																																																																																																																																																																																																																																						
⋮																																																																																																																																																																																																																																																																						
⋮																																																																																																																																																																																																																																																																						
구 계																																																																																																																																																																																																																																																																						
××구																																																																																																																																																																																																																																																																						
⋮																																																																																																																																																																																																																																																																						
⋮																																																																																																																																																																																																																																																																						
⋮																																																																																																																																																																																																																																																																						



현행	개정안								
	<p>3. 투자심사에 따른 문제점 및 발전방안</p> <table border="1" data-bbox="820 421 1418 1344"> <tbody> <tr> <td data-bbox="820 421 1043 645">제 목</td> <td data-bbox="1043 421 1418 645"></td> </tr> <tr> <td data-bbox="820 645 1043 880">실 태</td> <td data-bbox="1043 645 1418 880"></td> </tr> <tr> <td data-bbox="820 880 1043 1111">문 제 점</td> <td data-bbox="1043 880 1418 1111"></td> </tr> <tr> <td data-bbox="820 1111 1043 1344">발전방안</td> <td data-bbox="1043 1111 1418 1344"></td> </tr> </tbody> </table>	제 목		실 태		문 제 점		발전방안	
제 목									
실 태									
문 제 점									
발전방안									

현	행	개	정	안																																																																																																																																																																																																								
<p>【별지서식 제5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조의2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재정투·융자심사사업 관리카드 < ※ 복사용지 A⁴ 규격으로 관리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년도 1 ~ n번 </div> <p style="text-align: center;">○ ○ 시 (○○담당관·과(소))</p> <p style="text-align: center;">재정투·융자심사사업 관리카드</p> <p><input type="checkbox"/> 사업명 :</p> <p><input type="checkbox"/> 투융자심사결과 (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사업개요</th> <th colspan="2">투자심사</th> <th colspan="2">심사결과</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간</th> <th>사업량</th> <th>총사업비</th> <th>심사일자</th> <th>심사기관</th> <th>결과</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당초</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재심사</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상황 (단위 :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삼사당시 사업비</th> <th colspan="7">연도별 집행</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합계</th> <th>기투자</th> <th>기준연 도(Y)</th> <th>Y+1</th> <th>Y+2</th> <th>Y+3</th> <th>Y+n</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rowspan="6">재원 별</td> <td>국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교부세</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시도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시군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지방채</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민자</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 rowspan="2">추진 상황</td> <td>기타</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내용</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r> <td></td> <td>공정율</td>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 및 대책</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문</th> <th style="width: 50%;">제</th> <th style="width: 50%;">점</th> <th style="width: 50%;">대</th> <th style="width: 50%;">책</th> </tr> </thead> <tbody> <tr> <td></td><td></td><td></td><td></td><td></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기타특이사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20px; width: 100%;"></div>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부서</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기</th> <th style="width: 25%;">관</th> <th style="width: 25%;">명</th> <th style="width: 25%;">부</th> <th style="width: 25%;">서</th> <th style="width: 25%;">단</th> <th style="width: 25%;">부</th> <th style="width: 25%;">서</th> <th style="width: 25%;">연</th> <th style="width: 25%;">락</th> <th style="width: 25%;">처</th> <th style="width: 25%;">완</th> <th style="width: 25%;">료</th> <th style="width: 25%;">일</th> <th style="width: 25%;">차</th> </tr> </thead> <tbody> <tr> <td>담</td><td>담</td><td>담</td><td>담</td><td>담</td><td>담</td><td>담</td><td>담</td><td>연</td><td>연</td><td>락</td><td>완</td><td>완</td><td>일</td><td>일</td> </tr> <tr> <td>당</td><td>당</td><td>당</td><td>당</td><td>당</td><td>당</td><td>당</td><td>당</td><td>차</td><td>차</td><td>처</td><td>일</td><td>일</td><td>차</td><td>차</td> </tr> </tbody> </table>		구분	사업개요			투자심사		심사결과		비고	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심사일자	심사기관	결과	내용	당초									재심사									구분	삼사당시 사업비	연도별 집행							비고	합계	기투자	기준연 도(Y)	Y+1	Y+2	Y+3	Y+n	계										재원 별	국비									교부세									시도비									시군비									지방채									민자									추진 상황	기타									내용										공정율									문	제	점	대	책						기	관	명	부	서	단	부	서	연	락	처	완	료	일	차	담	담	담	담	담	담	담	담	연	연	락	완	완	일	일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차	차	처	일	일	차	차	<p><삭제></p>		
구분	사업개요			투자심사		심사결과		비고																																																																																																																																																																																																				
	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심사일자	심사기관	결과	내용																																																																																																																																																																																																					
당초																																																																																																																																																																																																												
재심사																																																																																																																																																																																																												
구분	삼사당시 사업비	연도별 집행							비고																																																																																																																																																																																																			
		합계	기투자	기준연 도(Y)	Y+1	Y+2	Y+3	Y+n																																																																																																																																																																																																				
계																																																																																																																																																																																																												
재원 별	국비																																																																																																																																																																																																											
	교부세																																																																																																																																																																																																											
	시도비																																																																																																																																																																																																											
	시군비																																																																																																																																																																																																											
	지방채																																																																																																																																																																																																											
	민자																																																																																																																																																																																																											
추진 상황	기타																																																																																																																																																																																																											
	내용																																																																																																																																																																																																											
	공정율																																																																																																																																																																																																											
문	제	점	대	책																																																																																																																																																																																																								
기	관	명	부	서	단	부	서	연	락	처	완	료	일	차																																																																																																																																																																																														
담	담	담	담	담	담	담	담	연	연	락	완	완	일	일																																																																																																																																																																																														
당	당	당	당	당	당	당	당	차	차	처	일	일	차	차																																																																																																																																																																																														



현행		개정안																																	
<p>【별지서식 제6호】</p> <p style="text-align: right;">[제7조의2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법인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5%;">기준</th> <th style="width: 10%;">평가배점</th> <th style="width: 10%;">평점</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점</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채비율 (25점)</td> <td>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200% 미만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200% ~ 300% 미만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300% ~ 400% 미만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400% 이상 </td> <td style="text-align: center;">(25) (20) (15) (10)</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자본금 (25점)</td> <td>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100% ~ 2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50% ~ 1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 미만 </td> <td style="text-align: center;">(25) (20) (15) (10)</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투자실적(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td> <td>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200% ~ 3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100 ~ 2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input type="radio"/> 투자실적 없음 </td> <td style="text-align: center;">(25) (20) (15) (10) (5)</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td> <td>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td> <td style="text-align: center;">(25) (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신용평가기관(D&B)의 신용조사결과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작성,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p>		구분	기준	평가배점	평점	비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200% 미만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200% ~ 300% 미만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300% ~ 400% 미만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100% ~ 2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50% ~ 1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200% ~ 3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100 ~ 2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input type="radio"/>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p><삭제></p>			
구분	기준	평가배점	평점	비고																															
계		100점																																	
부채비율 (25점)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200% 미만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200% ~ 300% 미만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300% ~ 400% 미만 <input type="radio"/> 자본금 대비 400% 이상	(25) (20) (15) (10)																																	
자본금 (25점)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200% 이상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100% ~ 2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50% ~ 1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 미만	(25) (20) (15) (10)																																	
투자실적(국내외 -1회투자금액중 가장 큰 규모) (25점)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300% 이상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200% ~ 3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100 ~ 2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금액의 100% 미만 <input type="radio"/> 투자실적 없음	(25) (20) (15) (10) (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25점)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25) (0)																																	
<p>【별지서식 제6호의2】</p> <p style="text-align: right;">[제7조의2제1항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민간자본 투자의향서 평가표(개인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5%;">기준</th> <th style="width: 10%;">평가배점</th> <th style="width: 10%;">평점</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점</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납부실적 (70점)</td> <td>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 ~ 2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 ~ 15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50% ~ 1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0% ~ 5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td> <td style="text-align: center;">(70) (65) (60) (55) (50) (45)</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td> <td>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1) 관공서가 발급한 납세필증 등을 토대로 작성하되, 납세액을 재산가액으로 환산하여 당해 투자액과 비교 2) 불량거래자 등록관계는 금융권에서 발급한 개인신용정보조회표로 확인</p>		구분	기준	평가배점	평점	비고	계		100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납부실적 (70점)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 ~ 2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 ~ 15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50% ~ 1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0% ~ 5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p><삭제></p>													
구분	기준	평가배점	평점	비고																															
계		100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납부실적 (70점)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200% 이상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150% ~ 2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100% ~ 15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50% ~ 10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0% ~ 50% 미만 <input type="radio"/> 당해투자 상당액의 0% 미만	(70) (65) (60) (55) (50) (45)																																	
불량거래자 등록여부 (30점)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미등록시 <input type="radio"/> 불량거래자로 등록시	(30) (0)																																	



익산시조례 제1100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16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포상조례” 를 “익산시 포상 조례”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시민상·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 제목 “(민주시민질서상)”을 “(모범시민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 로 하고, “20인” 을 “20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표창장은”을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9조에 따라” 로 하고, “표창 적부”를 “포상 적합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장은”을 “위원장은”으로 하고, “기획행정국장이 된다”를 “위원중 직제상 선임부서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의 제목 “(포상시기)”를 “(계획포상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계획포상제) 포상은 매년 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 승인한 포상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규칙)”을“(운영지침)”으로 하고, 제목 외의 본문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 따로”로 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익산시포상조례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민주시민 질서상·모범공무원 포상과 도덕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과 도덕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p> <p>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2.(생략)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p> <p>제6조 ~ 제7조(생략) 제7조의2(민주시민질서상)①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확립 5. 그밖의 도시질서 확립 ②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년 4회 시행하되 1회 3명으로 한다.</p>	<p>제명 익산시 포상 조례 제1조 ~ 제3조 (현행과 같음)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시민상·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표창장) ----- -----. 1. ~ 2.(현행과 같음) <삭제></p> <p>제6조 ~ 제7조(현행과 같음) 제7조의2(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③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첩 2. 각종 행사에 초청 사기양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시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생략)</p> <p>제9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의회사무국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p> <p>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따른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 ----- ----- ----- ----- ----- 20명 ----- -----.</p> <p>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 ----- -----.</p>



현행	개정안
<p>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신된 자의 표창 적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p> <p>③ (생략)</p> <p>④위원은 4급부서장, 감사팀장, 직제상 선임여성과장, 합열읍장, 중앙동장, 직장협의회 회장으로 한다.</p> <p>⑤~⑥ (생략)</p> <p>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인력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p>	<p>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9조에 따라-----포상 적합 여부-----</p> <p>② 위원장은 -----위원중 직제상 선임부서장이 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은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여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p>
<p>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p>	<p>제11조(계획포상제) 포상은 매년 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 승인한 포상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p>
<p>제12조~제13조(생략)</p> <p>제14조(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제13조(현행과 같음)</p> <p>제14조(운영지침)-----</p> <p>-----시장이 따로-----.</p>

익산시조례 제1101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16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합방위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로 하고, “(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협의회를”을 “협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익산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을 “익산시 비전홍보담당관”으로 한다.

7. 익산소방서장
8. 익산시 재향군인회장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및 익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 (생략)</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② <u>협의회를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1. ~ 6.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신설〉</p> <p style="padding-left: 20px;">〈신설〉</p> <p style="padding-left: 20px;">③ ~ ④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⑤ <u>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u></p> <p style="padding-left: 20px;">1.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2. 심리전담당 간사 : <u>익산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u></p> <p style="padding-left: 20px;">3. ~ 5.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⑥ ~ ⑦ (생략)</p> <p>제4조 (생략)</p>	<p>제1조(목적) ----- 「<u>통합방위법</u>」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p> <p>-----</p> <p>(이하 “<u>협의회</u>”라 한다) -----</p> <p>-----</p> <p>-----</p> <p>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② <u>협의회의</u>-----</p> <p>-----</p> <p style="padding-left: 20px;">1. ~ 6.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7. <u>익산소방서장</u></p> <p style="padding-left: 20px;">8. <u>익산시 재향군인회장</u></p> <p style="padding-left: 20px;">③ ~ ④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⑤ -----</p> <p>-----</p> <p style="padding-left: 20px;">1.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2. 심리전담당 간사 : <u>익산시비전홍보담당관</u></p> <p style="padding-left: 20px;">3. ~ 5.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⑥ ~ ⑦ (현행과 같음)</p> <p>제4조 (현행과 같음)</p>

익산시조례 제1102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16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익산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유통업무 담당국장
6. 익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공석이 된 후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법 제12조 제2항의 대규모점포관리자"를 포함한다)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대표자 및 대리인) ① 다수인이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및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 신청인들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그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해당 지역의 상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비용의 부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법 인 명 칭	
	성명(대표자)	
	주 소	
원 인 제 공 자	법 인 명 칭	
	성명(대표자)	
	주 소	
분쟁 내용		
피해 사항		
조정요청 사 항		
기타 사항		

위와 같이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분쟁조정서

신청인	법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원인제공자	법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분쟁내용		
조정내용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분쟁제공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익산시조례 제1103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16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심의·건의·의결”을 “심의·건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5항 중 “제1조의4 제2항 각호”를 “제1조의5제2항 각 호”로 하고,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를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로”를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으로 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 ----- ----- ----- -----.</p>
<p>제2조(기능) ①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p>1. ~ 4. (생략)</p> <p>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6.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2조(기능) ①----- ----- 심의·건의 ----- ----- 1. ~ 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6.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 ④ (생략)</p> <p>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총괄기획업무담당주사, 의료보장 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서비스 연계업무담당주사,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로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p> <p>⑥ ~ ⑧ (생략)</p>	<p>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제1의5제2항 각 호----- ----- 기초생활 보장업무담당주사----- -----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 ----- ⑥ ~ ⑧ (현행과 같음)</p>



익산시조례 제1104호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16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여”란 이 조례에 따른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달부터 급여의 종류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조(급여의 종류)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복구입비
2. 수학여행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급여결정 및 지급시기) ① 시장은 급여의 결정을 수급자 선정 달 기준으로 정하며 그 결과를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구입비는 1회에 한하여 상반기에 지급한다. 다만, 신규 책정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수학여행비는 수학여행 실시 전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급여 지급대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복구입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2. 수학여행비 : 초·중·고등학생 중 수학여행에 직접 참여하는 자
3. 제5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8조(지급방법) 시장은 급여를 지원할 때에는 교복구입비는 부모 또는 해당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수학여행비는 해당학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학적변동·전출·수급중지·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되었을 때
2.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3.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4. 제7조의 지급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을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규칙 제512호

익산시도덕상표창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8월 16일

익 산 시 장 이 한 수

익산시도덕상표창규칙 폐지규칙

익산시도덕상표창규칙은 폐지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공고 제2010-1157호

익산시경로당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16.

익 산 시 장

익산시경로당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익산시경로당설치·운영 조례

2. 제정이유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건전한 여가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을 원활히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비의 지원(안 제3조)

- ① 경로당 설치비
- ② 경로당시설 운영비, 난방연료비(미등록경로당 포함),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 ③ 경로당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및 비품보강 사업비 단, 임차건물은 제외
- ④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 ⑤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 ⑥ 그밖의 시장이 경로당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⑦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나. 경로당 지원제한 사항(안 제4조)

- ① 시장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동일 경로당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 ② 경로당 신축대상지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사업비를 제한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경로당으로 활용할 만한 건축물이 있는 마을(지역)에 대해서는 경로당 설치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다. 운영 실태조사 사항(안 제6조)

-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운영실태조사 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753 익산시 시청로 1(남중동 60번지) 익산시청 사회복지과(전화 063-859-5343, FAX 063-859-5072)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사회복지과(전화 063-859-5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 ·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하여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설치”라 함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함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라 함은 제3조 제1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수 있다.

1. 경로당 설치비
 2. 경로당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미등록 경로당포함),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3. 경로당시설 환경개선(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및 비품보강 사업비. 단, 임차 건물은 제외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6. 그밖의 시장이 경로당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②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제한)①시장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동일 경로당에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 ②경로당 신축대상지로 선정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사업비를 제한할 수 있다.
- ③시장은 경로당으로 활용할 만한 건축물이 있는 마을(지역)에 대해서는 경로당 설치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6조(운영 실태조사) ①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율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 할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시장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경로당의 운영비를 보조 받았거나 보조 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